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6. 9 선고 2021가단103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1. 5. 26.

판결 선고2021. 6. 9.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7. 2. 6. 접수 제5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9월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7. 2. 13.경 춘천지방법원 2017개회237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2019. 4. 24.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은 2019. 5. 9. 확정되었다.

나. 한편 E은 2018. 10. 24. F 유한회사에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다시 원고는 2020. 9. 4. F 유한회사로부터 D에 대한 7,777,76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F 유한회사는 2020. 10. 7. D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승계 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D은 위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직전인 2017. 2. 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양수금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나. 피고는 2013. 6. 24. D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신 양수하기로 구두약정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남편 G 명의의 계좌로 2013. 6. 24. D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D의 누나인 점, ② D은 개인회생신청 불과 20여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6.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D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7. 2. 6. 접수 제5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명중

별지